# 「양도성예금증서」특약

### 제1조 증서발급

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합니다.

#### 제2조 가입대상

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대상은 거주자로 합니다.

### 제3조 가입금액

양도성예금증서의 가입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합니다.

## 제 4 조 만기일전 지급거절

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일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.

#### 제 5 조 만기후이자

이 예금을 만기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,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
## 제6조 등록발행

- ① 양도성예금증서는 거래처가 요청하는 경우 <u>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,「은행법」및 관련 법규</u>에 따라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.
- ②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권리행사는 각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- ③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등록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거래처가 부담합니다.

#### 제 7 조 관련 법규의 준용

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<u>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</u>, 「은행법」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## <부 칙>

이 약관은 2016년 9월 9일부터 적용합니다.

#### <부 칙>

이 약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